

제287회 시의회 정례회  
기획경제위원회  
2019. 06. 14.(금)

I·SEÒUL·U  
너와 나의 서울

세계 최고의 소기업·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기관

# 정 관 변 경 보 고

# 정관 변경 보고

## I. 변경이유

- 「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  - 市 ‘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’ (2019.03.29.)
    - 주요내용 : 근로자이사제→노동자이사제, 근로자이사→노동자이사, 근로자→노동자

## II. 주요내용

### 1 용어 정비 [제7조, 제10조, 제11조]

- 「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 사항 반영
  -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동의 가치,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‘근로’라는 용어를 ‘노동’으로 변경

※ 「‘근로’를 ‘노동’으로 행정용어 개선계획」 (노동정책담당관-3880, 2019.3.28.)

#### - ‘근로’와 ‘노동’의 개념 -

- ‘근로’는 ‘사용자에게 종속이나 예속되어 일함’, ‘근로자’는 ‘근면하고 성실하게 기업을 위해 순종적으로 일하는 사람’의 의미
- ‘노동’은 ‘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’는 개념, ‘노동자’는 ‘자신의 일에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사람’의 의미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
제7조 (임원)	「서울특별시 <u>근로자이사제</u> 운영에 관한 조례」	「서울특별시 <u>노동자이사제</u> 운영에 관한 조례」
제7조(임원), 제10조 (임원의 임기 및 해임), 제11조 (임원의 결격사유)	<u>근로자이사</u>	<u>노동자이사</u>
제10조 (임원의 임기 및 해임)	<u>근로계약</u>	<u>노동계약</u> (「 <u>근로기준법</u> 」 제2조제4호의 <u>근로계약을 말한다</u> )
제11조 (임원의 결격사유)	<u>근로자</u>	<u>노동자</u>

### Ⅲ. 시행일 등

- 시행일** :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이 있는 날
- 다른 제규정 개정** : 정관의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내용은 다른 제규정에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봄

【붙임】 정관 변경 전·후 대비표 1부. 끝.

【붙임】

## 정관 변경 전 · 후 대비표

현 행	변 경(안)
정 관	정 관
제1장 총 칙	제1장 총 칙
제1조~제6조 -- (기재 생략) --	(현행과 같음)
제2장 임 원	제2장 임 원
제7조(임원) ① 재단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, 상임이사 2인이내, 비상임이사 5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. 이 때 비상임이사 1인은 「서울특별시 <u>근로자이사제</u>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<u>근로자이사</u> 로 할 수 있다.	제7조(임원) ① 재단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, 상임이사 2인이내, 비상임이사 5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. 이 때 비상임이사 1인은 「서울특별시 <u>노동자이사제</u>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<u>노동자이사</u> 로 할 수 있다.
② (2010.01.11.삭제)	} (현행과 같음)
제8조~제9조 -- (기재 생략) --	
제10조(임원의 임기 및 해임) ①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<u>근로자이사</u> 의 경우에 그 임기 중 <u>근로계약</u> 이 종료된 때에는 <u>근로자이사</u> 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.	제10조(임원의 임기 및 해임) ①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<u>노동자이사</u> 의 경우에 그 임기 중 <u>노동계약</u> (「 <u>근로기준법</u> 」 제2조제4호의 <u>근로계약을 말한다</u> )이 종료된 때에는 <u>노동자이사</u> 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.
② 당연직 이사는 제9조 제3항의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,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.	} (현행과 같음)
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	
④ 임원 연임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	
④ 임원 연임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	④ 임원 연임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

현 행	변 경(안)
<p>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상임이사(근로자이사 제외) 및 비상임감사 연임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⑤ 시장은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단법, 재단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때</li> <li>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</li> <li>3. 파산선고를 받은 때</li> <li>4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</li> </ol> <p>⑥ 시장은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임원을 재단에 대한 공적, 고의·중과실 여부, 손해 발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계(직위해제 포함)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단의 규정을 위반한 때</li> <li>2.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때</li> <li>3. 청렴의무 등 제반의무를 위반한 때</li> <li>4. 기타 재단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분쟁의 야기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</li> </ol> <p><b>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</b>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2018.06.25.삭제)</li> <li>2. 미성년자,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</li> <li>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</li> </ol>	<p>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상임이사(노동자이사 제외) 및 비상임감사 연임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</b>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변 경(안)
<p>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</p> <p>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</p> <p>6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7. <u>근로자이사</u>의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 제1항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</p> <p>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</p> <p>③ <u>근로자이사</u>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.</p> <p>1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상 재단 등의 노동조합원</p> <p>2.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의 <u>근로자</u>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<u>근로자</u>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노동자이사</u>의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 제1항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노동자이사</u>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.</p> <p>1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상 재단 등의 노동조합원</p> <p>2.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의 <u>노동자</u>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<u>노동자</u>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</p>
<p>제12조~제14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3장 이사회</b></p> <p>제15조~제21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4장 업 무</b></p> <p>제22조~제27조의2 -- (기재 생략) --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변 경(안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 회 계</p> <p>제28조~제35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6장 해 산</p> <p>제36조~제37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1~16) (기재 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17)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중소기업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다른 제규정의 개정) 정관의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내용은 다른 제규정에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.</p>